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24. 6.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정관」 제24조의2에 따라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장 이사회 구성

제3조(구성) ① 이사회 구성은 「정관」 제19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13조 제3항을 따른다.

제4조(간사) 의장은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처의 장으로 보임한다.

제5조(노동이사) ① 제3조에 따른 비상임이사 중 1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이하 "노동이사"라 한다)로 한다.

② 원장은 노동이사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선임비상임이사) 선임비상임이사는 「정관」 제22조를 따르며, 비상임이사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제3장 운영 및 회의 절차

제7조(의결·보고 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 결산
-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채권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정관의 변경
8. 다음 각 목의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 가. 이사회 운영규정
 - 나. 직제규정
 - 다. 보수규정
 - 라.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 마. 다른 규정에 이사회 의결을 얻도록 정한 사항
9. 임원의 보수
10. 법령·정관 등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1.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12. 기관의 중장기 경영목표
1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보고사항을 다룬다.

1. 국정감사, 회계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3. 연간 주요 업무계획
4. 기관 운영에 대한 대외 평가 결과
5.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보고하도록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절차) ① 이사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으로 구분하고, 소관부서에서 제안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원장의 결재를 얻어 이사회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회 안건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다음 연도 예산안인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소집 등) ① 이사회 소집 등은 「정관」 제21조 제1항부터 제4항을 따른다.

②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중요도가 다소 낮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 회의는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때 의장은 서면 회의 사유를 이사회 구성원에게 알리고,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서면 회의에는 「정관」 제21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정관」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한 자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도록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 참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이사회 개최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이사회는 「정관」 제21조 제5항에 따라 개의 및 의결한다.

② 이사회 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의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수정 또는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이사회 회의 안건 중 자료의 불충분 등의 사유로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의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의장 또는 이사가 이해당사자인 경우
2. 이사 또는 이사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이사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사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3조(제안설명 등) ① 이사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소관부서의 장 또는 간사가 제안설명을 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인을 이사회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통보) 간사는 이사회 회의 결과를 제안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사록) ① 이사회 의 의사록은 「정관」 제24조를 따라 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은 기술원 홈페이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은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수당 등) 「정관」 제14조에 따라 비상임 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